

의안번호	2200871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.
추 계 번호	24B1102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	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. 다만,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)	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3	안 제8조의3(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제공)	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의5(대학등의 고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)	정부는 대학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,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8조의6(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)	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, 임금 수준, 일·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(이하 “청년친화강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1항 신설)	재량규정
		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,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	• 미대상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, 고용 의무의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,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정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
3	안 제8조의3(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제공)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제공의 위탁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8조의5(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학 등의 청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현황에 따라 결정됨 - 그러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대학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, 재정적 지원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
5	안 제8조의6(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현황과 이들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따라 결정됨 - 그러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현황과 이들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7조제4항 신설) 개정안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청년이 취업한 중소기업 및 해당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실적에 따라 결정되나,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청년이 취업한 중소기업의 규모와 이들의 고용실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, 재정지원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
- (안 제8조의6 신설)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대학 등이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 - 정부가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,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조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학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정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- (안 제8조의6 신설) 개정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해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 - 중소기업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, 임금 수준, 일·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(이하 “청년친화강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,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
-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 현행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을 근거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7개임

[표]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을 근거로 추진 중인 사업(2024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재원	사업명(코드)	근거조항	연령기준	예산
1	일반회계	청년일자리창출지원(1043-301) 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	§7 ①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607,780
		청년일자리창출지원(1043-301) －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	§3 ①, §7 ①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49,900
2	일반회계	청년내일채움공제(일반)(1044-301)	§7 ①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162,808
3	고용보험 기금	청년내일채움공제(고보)(1061-350)	§7 ①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76,653
4	일반회계	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(1051-305) － 청년일경험지원	§8의2 ①·②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171,820
		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(1051-305) － 청년도전지원사업	§3 ① §8의4 ①②③	18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45,833
		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(1051-305) － 청년성장프로젝트	§3 ① §8의3 ①·② §8의4 ①②③	15~34세 (자사제도에 따라 34세 초과자 30%까지 가능)	25,100
5	일반회계	해외취업지원(1051-304)	§12 ①	15~34세 (군필자는 최대 39세)	57,540
6	일반회계	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(1051-306)	§3 ① §8의4 ①·② §16의2 ①	－	5,378
7	일반회계	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(1032-303)	§3 ③ §8의2 ①·② §8의3 ①·②	15~34세	83,147

주: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 중 ‘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(7억 9,000만원)’ 사업은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, ‘공정채용 인프라구축(37억 7,100만원)’ 사업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수행

자료: 고용노동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